

한시 병보상금부지ㄱ결정 ㄴ소소송의 조기 공정판결을 요구하는 요청서

2001 년 5 월 11 일 일본의 구마모토지방법소는 ‘나예방법’에 의해 비ㄴ되었던 한시 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이 ㄴ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ㄴ다. 이에 기해 ‘한시 병요양소입소자ㄴ에대한보상금의지ㄴ에관한법ㄴ’이 제정되었고 한시 병요양소에 입소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한국, 대만에 존재하ㄴ던 한시 병 요양소 입소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 하에서 한국의 국립한시 병요양소 소ㄴ도ㄴ생원에 입소하ㄴ던 117 명이 2003 년과 2004 년 3 월에 이르기까지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금을 청구하ㄴ지만 일본국은 2004 년 8 월 16 일 원고들은 위법에서 말하는 한시 병 요양소의 입소자 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ㄴ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ㄴ한 소ㄴ도ㄴ생원 입소자들은 한시 병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일본국의 법과 정책에 의해 강제 수용 당함으로써 피해를 받은 것이므로, 그 피해가 위 보상법에 의해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일본국은 ㄴ시 소ㄴ도ㄴ생원 입소자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ㄴ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평ㄴ연령이 80 세를 넘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조기해결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ㄱ 재프소가 하루라도 빠 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요청사항

ㄱ 재프소가 본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 명	주 소	서명/날인

<주관>

한시 병소ㄴ도ㄴ생원.대만ㄴ생원보상청구일본변호단

한시 병소ㄴ도ㄴ생원보상청구소송대한민국변호단